

○ 적합도조사용 대표경력 허용 기준

대표경력 사용 방안
<p>○ 경력기재 글자 수 25자 이내 (2개 경력 글자 수 합산)만 인정됨</p> <p>○ <u>공식 명칭사용 등으로</u> 2개 경력의 글자가 25자가 넘을 경우,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</p> <p>○ 허위경력증명서 사용 시 공천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</p>
<p><대표경력 허용 기준></p>
<p>1.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한다.</p> <p>2.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. (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,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 <p>※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관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시 원하는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 <p>3.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·단체의 경력 -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 <p>4.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은 불허한다. 다만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다.</p> <p>5.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.</p>
<p>적용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와대 근무경력은 ‘대통령비서실 ○○○’ 으로 통일함 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 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 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 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 - ○○○사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 → 국회의원 보좌관(소속 정당명)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 -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를 반드시 표기함

6. 소속기관·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한다.

적용 예시

-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 경실련 사무처장 등

7. 학력,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한다.

적용 예시

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 ○○대 정치학 박사

8. 출마경력 시 당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한다. (※예비후보는 불허)

적용 예시

- (불허) 종로구의회의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국회의원후보
- (허용)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,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

9. 당직 경력 사용 허용. 단, 특정 정치인 성명을 표시한 것은 불허한다.

적용 예시

- ○○○ 당대표 특별보좌관 : 불허 →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: 허용
-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경력증명서 발급된 경우에 한함(재직기간 무관)